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9누118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판결 [redacted]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단12627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피고가 2018. 1. 3.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78,9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인 2016. 2. 22.과 2016. 3. 10. 원고 B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식양수인인 원고들이 양도인인 D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D이 원고 B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D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억 2,000만 원은 원고들이 D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를 매도하거나 토지 매도를 부탁한 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